"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기강감사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국정 엄중 상황에 따른 기강감사

2017. 4.

감 사 실
한국국토정보공사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엄중 국정 상황에 따른 복무 위반행위 차단, 안전 및 위험예방 점검

□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언행 등으로 선거철(선거운동 등) 위반행위 점검

□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기타 사항 점검 등

2. 감사대상 기관

□ 대상기관: ○○○○○지역본부 ㅁㅁ지사 등 8개 기관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복무규정 관련 위반사항,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사항, 안전 및 위험예방, 선거철(선거운동 등) 위반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음

□ **복무규정 관련 위반사항 점검**
- 근무시간 준수, 출·퇴근 등 근태등록, 근무지 무단이탈
- 비상 대비태세 유지 점검
- 비밀엄수 및 정보의 유출(중요 정책문서 방치 등) 금지 위반 등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사항 점검**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이용 금지
-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 금지
- 근무시간 내 음주 및 퇴근 후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품위 훼손 등

□ **안전 및 위험예방 점검**
- 시설안전관리 점검, 에너지 절약 소홀 등

□ **선거철(선거운동) 위반행위 점검**
- 복무관련 제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선거활동 등 대민 오해소지 언행 등

□ **정국 상황을 빙자한 업무처리 지연·해태 행위 점검**
- 타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지연, 업무 해태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7. 4. 4.부터 4. 10.까지 5일간 2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2017-29	○○지역본부 ㅁㅁ지사 (인사처)	정보보안(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업무처리 소홀			기관경고	20일	김○○ 김□□
2017-30	○○○○지역본부 ㅁㅁ지사 (인사처)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소홀			기관경고	20일	김○○ 김□□
1-1	○○지역본부 ㅁㅁ지사 (운영지원처)	옥외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			2개월	김○○ 김□□

※ 처분요구: 3건<문책요구(기관경고) 2건, 개선요구 1건,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정보보안(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업무처리 소홀	문책 (기관경고)	○○지역본부 ㅁㅁ지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5장에 따라 "PC 등 단말기의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ㅁㅁ지사는 2016년 정기종합감사('16. 9. 1.~9. 9.) 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보"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감사결과 사후관리('17. 2. 8.) 시에도 감사 처분 이행이 부적정하여 현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기강감사일('17. 4. 5.) 현재까지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는 등 정보보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소홀	문책 (기관경고)	○○○○지역본부 ㅁㅁ지사			○○○○지역본부 ㅁㅁ지사는 "2015년 지적측량의뢰서" 전체를 잠금장치 없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고, 출장 중 신분증 책상 위 방치, 출장 중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업무처리계획서" 책상 위 방치, 옥상 이동 계단 등에 폐기된 캐비닛 등을 방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대피 시 어려움이 있는 등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음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 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본사 포함) 3부. 끝.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책요구(기관경고)

제　　목　**정보보안(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지역본부 ㅁㅁ지사**

문 책 대 상 자　**ㅇ ㅇ** 지역본부 ㅁㅁ지사

문 책 종 류　기관경고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인가자가 PC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조·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각종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단말기 보안대책으로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고 정보보안담당자는 PC등 단말기에 대한 별지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ㅇㅇ지역본부 ㅁㅁ지사는 “2016년 정기종합감사(2016. 9. 1.~9. 9.)”에서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정보보안 업무 처리소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 감사결과 사후관리 현지 실사(2017. 2. 8.)”에서 종합감사 처분사항 이행이 부적정[1]하여 현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의 관리는 출력물 형태로 관리할 경우 시건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파일 형태로 관리할 경우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USB에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전자결재 내부결재를 하여 문서함에 보관하고 있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관리방법을 즉시 변경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정보보안업무지침」에 따라 시건 장치가 있는 곳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USB에 저장하여 관리하도록 현지에서 조치함

그런데도 기강감사일(2017. 4. 5.) 현재까지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는 등 정보보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처장)**은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에 따라 정보보안(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ㅁㅁ지역본부 ㅇㅇ지사에 **문책(기관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책요구(기관경고)

제　　목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ㅁㅁ지사**

문 책 대 상 자　　ㅇ ㅇ ㅇ ㅇ ㅇ 지역본부 ㅁㅁ지사

문 책 종 류　　기관경고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사업 등 각종 사업 및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한 문서 등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되는 기관에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서는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는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강화(경영지원실-1125: 2017. 2. 17.)”에서 중요 정책문서 등 방치 금지 등 보안관리 철저와 화재사고 예방활동 강화 등을 지시하였다.

[표]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위반 등 점검 결과

소속	위반 현황	
ㅇㅇㅇㅇ지역본부 ㅁㅁ지사	1	잠금장치 미설치 캐비닛에 주요 서류 보관
	2	2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및 옥상 출입문 앞에 캐비닛 등이 방치되어 위급상황 시 이동 어려움
	3	3층 옥상 출입구 전등 불량
	4	금고 잠금 설정 미흡
	5	출장 중 신분증 책상 위 방차
	6	출장 중 업무처리계획서 방치

[그림] 점검 결과 사진대장

① 잠금장치 미설치 서랍장에 서류 보관	② 옥상 이동 계단 폐 캐비닛 등 방치	② 옥상 이동 계단 폐 캐비닛 등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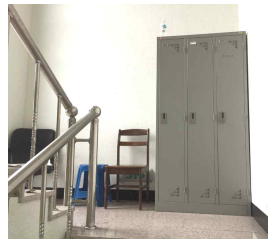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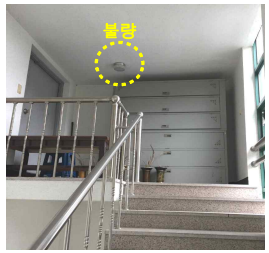
④ 금고 잠금 설정 미흡	**⑤ 출장 중 신분증 방치**	**⑥ 출장 중 업무처리계획서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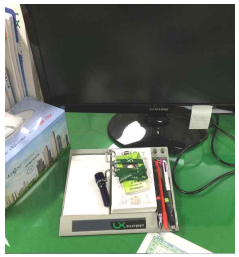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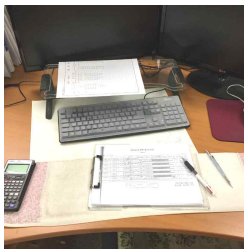

그런데도 ㅇㅇㅇㅇ지역본부 ㅁㅁ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2015년 지적측량의뢰서” 전체를 잠금장치 없는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고, 출장 중 신분증 책상 위 방치, 출장 중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업무처리계획서” 책상 위 방치, 옥상 이동 계단 등에 폐기된 캐비닛 등을 방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응급대피 시 어려움이 있는 등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사장(인사처장)**은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에 따라 보안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ㅇㅇㅇㅇ지역본부 ㅁㅁ지사에 **문책(기관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선요구

제　　목　**옥외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ㅇㅇ지역본부 운영지원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다양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임·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시설안전관리)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붕괴 및 전도 점검, 소방설비 상태 점검, 건축물 등의 균열 등 노후상태 확인, 안전시설 및 설비 등 관리상태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옥 등의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의 안전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소홀한 사항 발견 시 이를 즉시 개선 조치하여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ㅇㅇ지역본부 ㅁㅁ지사에서는 2016년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표] 현황과 같이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직원 또는 지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주차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고 건물 외벽 타일이 파손 된 채 방치되고 있는 등 시설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ㅇㅇ지사 옥외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물 미설치 현황 및 건물 외벽 타일 파손 방치

주차장 추락방지 휀스 미설치		건물 외벽 타일 파손 방치

조치할　사항　**ㅇㅇ지역본부장**은 ㅁㅁ지사 옥외 주차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건물 외벽에 파손된 타일을 교체하여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